



# Nokia Open Source License (NOKOS License) 버전 1.0a

## 노키아 오픈소스 라이선스 (NOKOS 라이선스) 버전 1.0a

### 1. DEFINITIONS.

#### 제 1 조. 정의.

"**Affiliates**" of a party shall mean an entity

어떤 당사자의 "**관계사 Affiliates**" 란,

- a) which is directly or indirectly controlling such party;
  - b) which is under the same direct or indirect ownership or control as such party; or
  - c) which is directly or indirectly owned or controlled by such party.
- a) 해당 당사자를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주체;
  - b) 해당 당사자와 동일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소유권이나 통제권에 의해 지배되는 주체; 또는
  - c) 해당 당사자에 의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소유되거나 관리되는 주체를 의미한다.

For these purposes, an entity shall be treated as being controlled by another if that other entity has fifty percent (50%) or more of the votes in such entity, is able to direct its affairs and/or to control the composition of its board of directors or equivalent body.

이러한 목적에 있어, 해당 주체에 대하여 어떤 다른 주체가 50% 이상의 의결권을 소유하고, 해당 주체의 직무를 감독하거나 이사회나 이에 상응하는 모임을 관리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주체는 그 다른 주체에 의해 관리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Commercial Use**" shall mean distribution or otherwise making the Covered Software available to a third party.

"**상업적 사용**" 이란 배포 또는 기타 방식으로 라이선스 적용 소프트웨어를 제 3 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Contributor"** shall mean each entity that creates or contributes to the creation of Modifications.

"기여자"란 수정코드를 작성하거나 수정코드의 작성에 기여하는 각 주체를 의미한다.

**"Contributor Version"** shall mean in case of any Contributor the combination of the Original Software, prior Modifications used by a Contributor, and the Modifications made by that particular Contributor and in case of Nokia in addition the Original Software in any form, including the form as Executable.

"기여자 버전"이란 기여자의 경우, 원본 소프트웨어, 어떤 기여자에 의해 사용된 선행 수정코드, 그리고 해당 기여자에 의해 작성된 수정코드의 결합물을 의미하며, 노키아의 경우에는 추가로 실행파일의 형태를 포함하여 원본 소프트웨어의 모든 형태를 포함한다.

**"Covered Software"** shall mean the Original Software or Modifications or the combination of the Original Software and Modifications, in each case including portions thereof.

"라이선스 적용 소프트웨어"란 원본 소프트웨어나 수정코드, 또는 원본 소프트웨어와 수정코드의 결합물을 의미하며, 각각의 부분도 포함한다.

**"Electronic Distribution Mechanism"** shall mean a mechanism generally accepted in the software development community for the electronic transfer of data.

"전자적 배포 방식"이란 데이터의 전자적 전송을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 커뮤니티에서 통상적으로 수용되는 방식을 의미한다.

**"Executable"** shall mean Covered Software in any form other than Source Code.

"실행파일"이란 소스코드를 제외한 다른 형태의 라이선스 적용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Nokia"** shall mean Nokia Corporation and its Affiliates.

"노키아"란 노키아사 또는 그 관계사들을 의미한다.

**"Larger Work"** shall mean a work, which combines Covered Software or portions thereof with code not governed by the terms of this License.

"복합저작물"이란 라이선스 적용 소프트웨어나 그 일부를 본 라이선스의 규정에 의해 구속되지 않는 코드와 결합시킨 저작물을 의미한다.

**"License"** shall mean this document.

"라이선스" 는 본 문서를 의미한다.

**"Licensable"** shall mean having the right to grant, to the maximum extent possible, whether at the time of the initial grant or subsequently acquired, any and all of the rights conveyed herein.

"라이선스 가능한"이란 가능한 최대 한도까지, 최초의 부여 또는 후속적 획득의 시점에 여기에서 다루는 모든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Modifications"** shall mean any addition to or deletion from the substance or structure of either the Original Software or any previous Modifications. When Covered Software is released as a series of files, a Modification is:

"수정코드"란 원본 소프트웨어나 선행 수정코드의 내용 또는 구조에 대한 추가사항이나 삭제사항을 의미한다. 라이선스 적용 소프트웨어가 일련의 파일로 릴리즈 되는 경우, 수정코드는:

a) Any addition to or deletion from the contents of a file containing Original Software or previous Modifications.

a) 원본 소프트웨어나 선행 수정코드를 포함하는 파일의 내용에 대한 추가사항이나 삭제사항을 의미한다.

b) Any new file that contains any part of the Original Software or previous Modifications

b) 원본 소프트웨어나 선행 수정코드의 어떤 부분이라도 포함하는 새로운 파일을 의미한다.

**"Original Software"** shall mean the Source Code of computer software code which is described in the Source Code notice required by Exhibit A as Original Software, and which, at the time of its release under this License is not already Covered Software governed by this License.

"원본 소프트웨어"란 Exhibit A 에서 요구되는 소스코드 고지에 설명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코드의 소스코드로서, 본 라이선스에 따라 릴리즈 되는 시점에 본 라이선스에 의해 구속되는 라이선스 적용 소프트웨어가 아닌 것을 의미한다.

**"Patent Claims"** shall mean any patent claim(s), now owned or hereafter acquired,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method, process, and apparatus claims, in any patent Licensable by grantor.

"특허 청구항"이란 부여자에 의해 라이선스 가능한 모든 특허 내에서, 방법, 절차, 기기 청구항을 제한 없이 포함하는, 현재 소유하거나 추후에 획득되는 모든 특허청구항을 의미한다.

"**Source Code**" shall mean the preferred form of the Covered Software for making modifications to it, including all modules it contains, plus any associated interface definition files, scripts used to control compilation and installation of an Executable, or source code differential comparisons against either the Original Software or another well known, available Covered Software of the Contributor's choice. The Source Code can be in a compressed or archival form, provided the appropriate decompression or de-archiving software is widely available for no charge.

"소스코드"란 수정을 가하는데 선호되는, 라이선스 적용 소프트웨어의 형식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그것이 포함하는 모든 모듈과 관련된 인터페이스 정의파일을 비롯하여, 실행파일의 제어와 컴파일을 제어하는데 사용되는 스크립트, 또는 원본코드나 기여자가 선택한, 널리 알려지고 통용되는 라이선스 적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스코드 차이점 비교표가 포함된다. 압축이나 아카이브를 해제하는 소프트웨어가 무료로 널리 통용된다는 조건에 한하여, 소스코드는 압축된 형식이나 아카이브 형식이 될 수 있다.

"**You**" (or "**Your**") shall mean an individual or a legal entity exercising rights under, and complying with all of the terms of, this License or a future version of this License issued under Section 6.1. For legal entities, "You" includes Affiliates of such entity.

"당신"이란 본 라이선스나 제 6 조 1 항에 따라 발행된 본 라이선스의 미래 버전의 조건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고, 그 조건을 모두 준수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의미한다. 법인의 경우 "당신"은 그러한 주체의 관계사를 포함한다.

## 2. SOURCE CODE LICENSE.

### 제 2 조. 소스코드 라이선스.

#### 2.1 Nokia Grant.

##### 2 조 1 항. 노키아의 부여 사항.

Subject to the terms of this License, Nokia hereby grants You a world-wide, royalty-free, non-exclusive license, subject to third party intellectual property claims:

본 라이선스의 규정에 의해 구속되어, 노키아는 당신에게 전세계적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제 3 자 지식재산권에 의해 구속되는 비독점 라이선스를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a) under copyrights Licensable by Nokia to use, reproduce, modify, display, perform, sublicense and distribute the Original Software (or portions thereof) with or without Modifications, and/or as part of a Larger Work;

a) 노키아에 의해 라이선스 가능한 저작권에 따라, 원본 소프트웨어(또는 그 일부)를, 수정코드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상태로, 또는 복합저작물의 일부로서 사용, 복제, 수정, 전시, 작동, 서브라이선스 설정 및 배포할 수 있는 라이선스; 그리고

b) and under Patents Claims necessarily infringed by the making, using or selling of Original Software, to make, have made, use, practice, sell, and offer for sale, and/or otherwise dispose of the Original Software (or portions thereof).

b) 원본 소프트웨어의 작성, 사용 또는 판매에 의해 필연적으로 침해되는 특허 청구에 따라, 원본 소프트웨어(또는 그 일부)를 작성, 사용, 작동, 판매, 판매를 위한 청약, 또는 주문작성 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처분할 수 있는 라이선스.

c) The licenses granted in this Section 2.1(a) and (b) are effective on the date Nokia first distributes Original Software under the terms of this License.

c) 본 2 조 1 항의 (a)와 (b)에서 부여된 라이선스들은 노키아가 본 라이선스에 따라 원본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최초의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d) Notwithstanding Section 2.1(b) above, no patent license is granted: 1) for code that You delete from the Original Software; 2) separate from the Original Software; or 3) for infringements caused by: i) the modification of the Original Software or ii) the combination of the Original Software with other software or devices.

d) 위의 2 조 1 항의 (b)와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특허 라이선스도 제공되지 않는다: 1) 당신이 원본 소프트웨어에서 삭제한 코드의 경우; 2) 원본 소프트웨어와 별도로 독립된 경우; 또는 3) i)원본 소프트웨어의 수정 또는 ii) 원본 소프트웨어와 다른 소프트웨어나 장치와의 결합으로 인해 야기된 침해의 경우.

## 2.2 Contributor Grant.

### 2 조2 항. 기여자 부여 사항.

Subject to the terms of this License and subject to third party intellectual property claims, each Contributor hereby grants You a world-wide, royalty-free, non-exclusive license

본 라이선스의 조건과 제 3 자의 지식재산권에 의해 구속되어, 각 기여자는 당신에게 전세계적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 라이선스를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a) under copyrights Licensable by Contributor, to use, reproduce, modify, display, perform, sublicense and distribute the Modifications created by such Contributor (or portions thereof) either on an unmodified basis, with other Modifications, as Covered Software and/or as part of a Larger Work; and

a) 기여자에 의해 라이선스 가능한 저작권에 따라, 그 기여자에 의해 작성된 수정코드나 그 일부를 있는 그대로, 또는 다른 수정코드와 함께, 라이선스 적용 소프트웨어, 또는 복합저작물의 일부로서, 사용, 복제, 수정, 전시, 작동, 서브라이선스 설정 및 배포할 수 있는 라이선스. 또한,

b) under Patent Claims necessarily infringed by the making, using, or selling of Modifications made by that Contributor either alone and/or in combination with its Contributor Version (or portions of such combination), to make, use, sell, offer for sale, have made, and/or otherwise dispose of: 1) Modifications made by that Contributor (or portions thereof); and 2) the combination of Modifications made by that Contributor with its Contributor Version (or portions of such combination).

b) 기여자에 의해 작성된 수정코드를 단독으로, 또는 기여자 버전과 결합된 상태(혹은 그 결합물의 일부)로 작성, 사용 또는 판매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침해되는 특허 청구에 따라, 1) 그 기여자가 작성한 수정코드(또는 그 일부); 그리고 2) 그 기여자가 작성한 수정코드와 그것의 기여자 버전을 결합한 결합물(또는 그 결합물의 일부)을 작성, 사용, 작동, 판매, 판매를 위한 청약, 또는 주문작성 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처분할 수 있는 라이선스.

c) The licenses granted in Sections 2.2(a) and 2.2(b) are effective on the date Contributor first makes Commercial Use of the Covered Software.

c) 제 2 조 2 항의 (a)와 (b)에서 부여된 라이선스들은 기여자가 라이선스 적용 소프트웨어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최초의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d) Notwithstanding Section 2.2(b) above, no patent license is granted: 1) for any code that Contributor has deleted from the Contributor Version; 2) separate from the Contributor Version; 3) for infringements caused by: i) third party modifications of Contributor Version or ii) the combination of Modifications made by that Contributor with other software (except as part of the Contributor Version) or other devices; or 4) under Patent Claims infringed by Covered Software in the absence of Modifications made by that Contributor.



d) 위의 2 조 2 항의 (b)와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특허 라이선스도 제공되지 않는다: 1) 기여자가 기여자 버전에서 삭제한 코드의 경우; 2) 기여자 버전과 별도로 독립된 경우; 또는 3) i) 기여자 버전에 대한 제 3 자의 수정 또는 ii) 그 기여자가 작성한 수정코드와 다른 소프트웨어나 장치와의 결합(기여자 버전의 일부로서 결합된 경우 제외)으로 인해 야기된 침해의 경우; 4) 해당 기여자에 의해 작성된 수정코드의 부재 시에 라이선스 적용 소프트웨어에 의해 침해되는 특허 청구항에 따르는 경우.

### 3. DISTRIBUTION OBLIGATIONS.

#### 제 3 조. 배포 의무.

##### 3.1 Application of License.

###### 3 조 1 항. 본 라이선스의 적용.

The Modifications which You create or to which You contribute are governed by the terms of this License,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Section 2.2. The Source Code version of Covered Software may be distributed only under the terms of this License or a future version of this License released under Section 6.1, and You must include a copy of this License with every copy of the Source Code You distribute. You may not offer or impose any terms on any Source Code version that alters or restricts the applicable version of this License or the recipients' rights hereunder. However, You may include an additional document offering the additional rights described in Section 3.5.

당신이 작성하거나 기여한 수정코드는, 제 2 조 2 항을 제한 없이 포함하는 본 라이선스의 규정에 의해 구속된다. 라이선스 적용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버전은 본 라이선스, 또는 제 6 조 1 항에 따라 릴리즈 되는 본 라이선스의 미래 버전의 규정에 따라서만 배포될 수 있다. 또한 당신은 본 라이선스의 사본 한 장을 당신이 배포하는 모든 소스코드의 복제본에 포함시켜야 한다. 당신은 어떤 소스코드에 대해서도, 본 라이선스의 적용 가능한 버전이나 그에 따라 수취인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변경하거나 제한하는 어떠한 조건도 제공하거나 부과할 수 없다. 그러나 제 3 조 5 항에 설명된 추가 권한을 제안하는 추가적 문서를 포함시킬 수는 있다.

##### 3.2 Availability of Source Code.

###### 3 조 2 항. 소스코드의 이용제공.

Any Modification which You create or to which You contribute must be made available in Source Code form under the terms of this License either on the same media as an



Executable version or via an accepted Electronic Distribution Mechanism to anyone to whom you made an Executable version available; and if made available via Electronic Distribution Mechanism, must remain available for at least twelve (12) months after the date it initially became available, or at least six (6) months after a subsequent version of that particular Modification has been made available to such recipients. You are responsible for ensuring that the Source Code version remains available even if the Electronic Distribution Mechanism is maintained by a third party.

당신이 작성하거나 기여한 모든 수정코드는 본 라이선스의 규정에 따라 소스코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는 실행파일 버전과 동일한 매체 또는 수용된 전자적 배포 방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당신이 실행파일 버전을 사용할 수 있게 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전자적 배포 방식을 통해 제공했을 경우, 그것이 제공된 최초의 날로부터 적어도 12 개월 이상, 또는 해당 수취인에게 해당 수정본의 후속 버전이 제공된 날로부터 적어도 6 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시켜야 한다. 만약 그 전자적 배포 방식이 제 3 자에 의해 관리되는 것이더라도, 당신은 소스코드 버전이 이용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 **3.3 Description of Modifications.**

#### **3 조 3 항. 수정코드의 설명.**

You must cause all Covered Software to which You contribute to contain a file documenting the changes You made to create that Covered Software and the date of any change. You must include a prominent statement that the Modification is derived, directly or indirectly, from Original Software provided by Nokia and including the name of Nokia in (a) the Source Code, and (b) in any notice in an Executable version or related documentation in which You describe the origin or ownership of the Covered Software.

당신은 당신이 배포하는 모든 라이선스 적용 소프트웨어 내에, 당신이 그 라이선스 적용 소프트웨어를 작성하기 위해 가한 수정사항들과 그 수정이 가해진 날짜를 기록하는 파일을 포함시켜야 한다. 당신은 수정코드가 노키아에 의해 제공된 원본코드로부터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파생되었다는 명시적인 진술과 노키아의 이름을 (a) 소스코드, 그리고 (b) 라이선스 적용 소프트웨어의 출처나 소유권을 설명하는 실행파일 버전의 고지나 기타 관련된 문서 내에 포함시켜야 한다.

### **3.4 Intellectual Property Matters**

#### **3 조 4 항. 지식재산권 문제.**

(a) Third Party Claims.

(a) 제 3 자 청구.

If Contributor has knowledge that a license under a third party'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required to exercise the rights granted by such Contributor under Sections 2.1 or 2.2, Contributor must include a text file with the Source Code distribution titled "LEGAL" which describes the claim and the party making the claim in sufficient detail that a recipient will know whom to contact. If Contributor obtains such knowledge after the Modification is made available as described in Section 3.2, Contributor shall promptly modify the LEGAL file in all copies Contributor makes available thereafter and shall take other steps (such as notifying appropriate mailing lists or newsgroups) reasonably calculated to inform those who received the Covered Software that new knowledge has been obtained.

만약 기여자가 어떤 제 3 자 지식재산권에 대한 라이선스가 제 2 조 1 항이나 2 조 2 항에 따라 해당 기여자에 의해 부여된 권한들을 행사하는데 요구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기여자는 소스코드 배포 시에, 청구의 내용과 그 청구를 제기하는 당사자를 상세히 설명하여 수취인이 누구에게 연락을 취해야 할 지 알 수 있는, "LEGAL"이라는 제목의 텍스트 파일을 포함시켜야 한다. 만약 3 조 2 항에 설명된 바에 따라 수정코드가 통용된 날 이후에 기여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기여자는 그 이후에 만드는 모든 복제본의 LEGAL 파일을 즉시 수정하고, 라이선스 적용소프트웨어를 양도받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정보의 입수를 알려줄 수 있을 만한 (예를 들어 적절한 메일링 리스트나 온라인 모임을 이용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b) Contributor APIs.

(b) 기여자 API.

If Contributor's Modifications include a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and Contributor has knowledge of patent licenses which are reasonably necessary to implement that API, Contributor must also include this information in the LEGAL file.

만약 기여자의 수정코드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포함하고, 기여자가 해당 API 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특허 라이선스에 대해 알고 있다면, 기여자는 이 정보를 LEGAL 파일 내에 포함시켜야 한다.

(c) Representations.

(c) 선언.

Contributor represents that, except as disclosed pursuant to Section 3.4(a) above, Contributor believes that Contributor's Modifications are Contributor's original creation(s) and/or Contributor has sufficient rights to grant the rights conveyed by this License.

기여자는, 위의 3 조 4 항에 제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여자의 수정코드가 기여자의 독창적인 창작이라고 믿으며, 본 라이선스에 의해 양도되는 권한을 부여할 충분한 권리가 기여자에게 있음을 선언한다.

### **3.5 Required Notices.**

#### **3 조 5 항. 고지 사항.**

You must duplicate the notice in Exhibit A in each file of the Source Code. If it is not possible to put such notice in a particular Source Code file due to its structure, then You must include such notice in a location (such as a relevant directory) where a user would be likely to look for such a notice. If You created one or more Modification(s) You may add your name as a Contributor to the notice described in Exhibit A. You must also duplicate this License in any documentation for the Source Code where You describe recipients' rights or ownership rights relating to Covered Software. You may choose to offer, and to charge a fee for, warranty, support, indemnity or liability obligations to one or more recipients of Covered Software. However, You may do so only on Your own behalf, and not on behalf of Nokia or any Contributor. You must make it absolutely clear that any such warranty, support, indemnity or liability obligation is offered by You alone, and You hereby agree to indemnify Nokia and every Contributor for any liability incurred by Nokia or such Contributor as a result of warranty, support, indemnity or liability terms You offer.

당신은 소스코드의 각 파일 내에 Exhibit A 의 고지 사항들을 복제해야 한다. 만약 특정 소스코드의 구조적 속성으로 인해 고지를 포함시키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당신은 사용자가 그러한 고지를 찾아볼 가능성이 높은 위치(관련 디렉토리 등)에 고지를 포함시켜야 한다. 한 개 이상의 수정코드를 작성한 경우, 당신은 Exhibit A 에 설명된 고지에 당신의 이름을 기여자로 추가시킬 수 있다. 당신은 또한 라이선스 적용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수취인의 권리나 소유권을 설명하는, 소스코드에 대한 모든 문서 내에 본 라이선스를 복제해야 한다. 당신은 선택적으로 라이선스 적용 소프트웨어를 받는 한 명 이상의 수취인에게 보증, 지원, 면책, 또는 책임의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당신의 단독적인 책임으로만 가능하며, 당신이 노키아나 다른 기여자를 대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당신은 그런 보증, 지원, 면책 또는 책임 의무가 당신에 의해서 단독으로 제공되는 것임을 절대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

당신이 제공한 보증, 지원, 면책 또는 의무 규정으로 인해 노키아나 어떤 기여자에 의해 야기된 모든 책임에 대하여, 노키아와 해당 기여자를 면책시키는 데 동의해야 한다.

### **3.6 Distribution of Executable Versions.**

#### **3 조 6 항. 실행파일 버전의 배포.**

You may distribute Covered Software in Executable form only if the requirements of Section 3.1-3.5 have been met for that Covered Software, and if You include a notice stating that the Source Code version of the Covered Software is available under the terms of this License, including a description of how and where You have fulfilled the obligations of Section 3.2. The notice must be conspicuously included in any notice in an Executable version, related documentation or collateral in which You describe recipients' rights relating to the Covered Software. You may distribute the Executable version of Covered Software or ownership rights under a license of Your choice, which may contain terms different from this License, provided that You are in compliance with the terms of this License and that the license for the Executable version does not attempt to limit or alter the recipient's rights in the Source Code version from the rights set forth in this License. If You distribute the Executable version under a different license You must make it absolutely clear that any terms which differ from this License are offered by You alone, not by Nokia or any Contributor. You hereby agree to indemnify Nokia and every Contributor for any liability incurred by Nokia or such Contributor as a result of any such terms You offer.

당신은 라이선스 적용 소프트웨어를 실행파일의 형태로 배포할 수 있다. 단, 이는 해당 라이선스 적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 3 조 1 항에서 5 항까지의 요구사항들이 충족되고, 라이선스 적용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버전이 본 라이선스의 조건에 의해 제공되며, 당신이 3 조 2 항의 의무사항들을 어떻게, 어느 위치에서 충족시켰는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는 내용의 고지를 포함한다는 조건이 충족된다는 전제 하에서만 허용된다. 해당 고지는 실행파일 버전의 모든 고지사항과 라이선스 적용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수취인의 권리를 설명한 관련 문서나 부속 문서에 눈에 띄는 방식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당신은 라이선스 적용 소프트웨어의 실행파일 버전이나 소유권을 당신이 선택한 라이선스에 따라 배포할 수 있다. 이 라이선스는, 당신이 본 라이선스의 조건을 준수하고, 실행파일 버전에 대한 라이선스가 본 라이선스에 제시된, 소스코드 버전에 대한 수취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변경하려고 하지 않는 한, 본 라이선스와 상이한 조건들을 포함할 수 있다. 다른 라이선스에 따라 실행파일 버전을 배포하는 경우, 당신은 본 라이선스와 다른 모든 조건들이 노키아나 다른 기여자가 아닌, 당신에 의해 단독으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당신은 당신이 제공한 조건으로 인해 노키아나 어떤

기여자에 의해 야기된 모든 책임에 대하여, 노키아와 해당 기여자를 면책시키는 데 동의해야 한다.

### **3.7 Larger Works.**

#### **3 조 7 항. 복합저작물.**

You may create a Larger Work by combining Covered Software with other software not governed by the terms of this License and distribute the Larger Work as a single product. In such a case, You must make sure the requirements of this License are fulfilled for the Covered Software.

당신은 라이선스 적용 소프트웨어를 라이선스의 규정에 의해 구속되지 않는 다른 소프트웨어와 결합함으로써 복합저작물을 만들고, 그 복합저작물을 단일한 제품으로 배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신은 라이선스 적용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본 라이선스의 요구사항들이 충족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 **4. INABILITY TO COMPLY DUE TO STATUTE OR REGULATION.**

### **제 4 조. 법률이나 규제로 인해 라이선스 규정의 준수가 불가능한 경우.**

If it is impossible for You to comply with any of the terms of this License with respect to some or all of the Covered Software due to statute, judicial order, or regulation then You must: (a) comply with the terms of this License to the maximum extent possible; and (b) describe the limitations and the code they affect. Such description must be included in the LEGAL file described in Section 3.4 and must be included with all distributions of the Source Code. Except to the extent prohibited by statute or regulation, such description must be sufficiently detailed for a recipient of ordinary skill to be able to understand it.

법률이나 법령 또는 규제로 인해 당신이 라이선스 적용 소프트웨어의 전체나 일부에 대하여 본 라이선스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당신은 (a) 가능한 최대한도로 본 라이선스의 규정을 준수하고; (b) 제한되는 사항과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코드를 설명해야 한다. 이러한 설명은 제3조 4항에 설명된 LEGAL 파일에 포함되어야 하며, 소스코드를 배포하는 모든 경우에 포함되어야 한다. 법률이나 규제에 의해 금지된 정도를 제외하고, 그러한 설명은 보통의 능력을 가진 수취인이 이해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자세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5. APPLICATION OF THIS LICENSE.**

### **제5조. 본 라이선스의 적용**

This License applies to code to which Nokia has attached the notice in Exhibit A and to related Covered Software.

본 라이선스는 노키아가 Exhibit A의 고지사항을 첨부한 코드와 관련된 라이선스 적용 소프트웨어에 적용된다.

## 6. VERSIONS OF THE LICENSE.

### 제6조. 라이선스의 버전.

#### 6.1 New Versions.

##### 6.1 신규 버전.

Nokia may publish revised and/or new versions of the License from time to time. Each version will be given a distinguishing version number.

노키아는 때때로 본 라이선스의 개정판이나 신규 버전을 공표할 수 있다. 각각의 버전은 버전 넘버로 구별된다.

#### 6.2 Effect of New Versions.

##### 6.2 신규 버전의 효력.

Once Covered Software has been published under a particular version of the License, You may always continue to use it under the terms of that version. You may also choose to use such Covered Software under the terms of any subsequent version of the License published by Nokia. No one other than Nokia has the right to modify the terms applicable to Covered Software created under this License.

라이선스 적용 소프트웨어가 라이선스의 특정 버전에 의해 공표되면, 당신은 언제나 해당 버전의 조건에 따라 그 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당신은 또한 선택적으로 노키아에 의해 공표된 모든 후속 버전의 조건에 따라 라이선스 적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도 있다. 본 라이선스에 의해 생성된, 라이선스 적용 소프트웨어에 적용 가능한 조건들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은 노키아에게만 주어진다.



## 7. DISCLAIMER OF WARRANTY.

### 제 7 조. 보증의 부인.

COVERED SOFTWARE IS PROVIDED UNDER THIS LICENSE ON AN "AS IS" BASIS, WITHOUT WARRANTY OF ANY KIND, EITHER EXPRESSED OR IMPLIED,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WARRANTIES THAT THE COVERED SOFTWARE IS FREE OF DEFECTS, MERCHANTABILITY, FIT FOR A PARTICULAR PURPOSE OR NON-INFRINGEMENT. THE ENTIRE RISK AS TO THE QUALITY AND PERFORMANCE OF THE COVERED SOFTWARE IS WITH YOU. SHOULD ANY COVERED SOFTWARE PROVE DEFECTIVE IN ANY RESPECT, YOU (NOT NOKIA, ITS LICENSORS OR AFFILIATES OR ANY OTHER CONTRIBUTOR) ASSUME THE COST OF ANY NECESSARY SERVICING, REPAIR OR CORRECTION. THIS DISCLAIMER OF WARRANTY CONSTITUTES AN ESSENTIAL PART OF THIS LICENSE. NO USE OF ANY COVERED SOFTWARE IS AUTHORIZED HEREUNDER EXCEPT UNDER THIS DISCLAIMER.

라이선스 적용 소프트웨어는 라이선스 적용 소프트웨어에 결함이 없다는 보증을 비롯하여, 상품성, 특정 목적 적합성, 또는 비침해에 대한 보증을 제한 없이 포함하여, 어떤 종류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보증도 포함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제공된다. 라이선스 적용 소프트웨어의 품질과 작동과 관련된 모든 위험은 당신이 부담한다. 어떤 라이선스 적용 소프트웨어에 어떤 식으로든 결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필요한 수리나 교정, 또는 서비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노키아나 그의 라이선서, 또는 계열사나 기타 다른 기여자가 아닌) 당신이 부담한다. 이 보증 부인 조항은 본 라이선스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 어떤 라이선스 적용 소프트웨어도 본 부인 조항에 의하지 않는 한 사용이 허가되지 않는다.

## 8. TERMINATION.

### 제 8 조. 종료.

**8.1** This License and the rights granted hereunder will terminate automatically if You fail to comply with terms herein and fail to cure such breach within 30 days of becoming aware of the breach. All sublicenses to the Covered Software which are properly granted shall survive any termination of this License. Provisions which, by their nature, must remain in effect beyond the termination of this License shall survive.

**8 조 1 항.** 본 라이선스와 여기에서 부여되는 권한들은 당신이 그 규정을 위반하고, 그러한 위반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위반 내용을 교정하지 않았을 경우,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본 라이선스가 종료되더라도, 라이선스 적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적절하게 부여된 서브라이선스들은 효력이 지속된다. 본 라이선스의 조항 중에서 그 속성 상 본 라이선스의 종료 이후에도 유효하게 지속되어야 하는 조항들은 효력이 지속된다.

**8.2** If You initiate litigation by asserting a patent infringement claim (excluding declaratory judgment actions) against Nokia or a Contributor (Nokia or Contributor against whom You file such action is referred to as "Participant") alleging that:

**8 조 2 항.** 당신이 노키아나 어떤 기여자(당신이 그런 소송을 제기하는 노키아나 기여자는 "당사자"라고 칭함)를 상대로,

a) such Participant's Contributor Version directly or indirectly infringes any patent, then any and all rights granted by such Participant to You under Sections 2.1 and/or 2.2 of this License shall, upon 60 days notice from Participant terminate prospectively, unless if within 60 days after receipt of notice You either: (i) agree in writing to pay Participant a mutually agreeable reasonable royalty for Your past and future use of Modifications made by such Participant, or (ii) withdraw Your litigation claim with respect to the Contributor Version against such Participant. If within 60 days of notice, a reasonable royalty and payment arrangement are not mutually agreed upon in writing by the parties or the litigation claim is not withdrawn, the rights granted by Participant to You under Sections 2.1 and/or 2.2 automatically terminate at the expiration of the 60 day notice period specified above.

a) 해당 당사자의 기여자 버전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어떤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확인 판결을 제외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당사자가 본 라이선스의 2 조 1 항이나 2 조 2 항 에 따라 당신에게 부여한 모든 권한은 당사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후에 종료될 것이다. 단, 당신이 그 통지를 받은 지 60 일 이내에 서면으로, (i) 피고에 의해 작성된 수정코드에 대한 당신의 과거 및 추후 사용료를 상호가 합의한 적절한 금액으로 지불한다고 동의하는 경우, 또는 (ii) 기여자 버전에 대하여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철회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통지 후 60 일 이내에 적절한 사용료와 지불 방식이 상호간에 서면으로 합의되지 않거나, 소송이 철회되지 않으면, 당사자가 2 조 1 항이나 2 조 2 항에 따라 당신에게 부여한 권한들은 상기 60 일의 통지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b) any software, hardware, or device, other than such Participant's Contributor Version, directly or indirectly infringes any patent, then any rights granted to You by such Participant under Sections 2.1(b) and 2.2(b) are revoked effective as of the date You first made, used, sold, distributed, or had made, Modifications made by that Participant.

b) 해당 당사자의 기여자 버전을 제외한 어떤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또는 장치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어떤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확인 판결을 제외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가 2 조 1 항의 (b)와 2 조 2 항의 (b)에 따라 당신에게 부여한 모든 권리는 당신이 해당 당사자에 의해 작성된 수정코드를 최초로 작성, 사용, 판매, 또는 배포한 날을 기준으로 효력이 취소된다.

**8.3** If You assert a patent infringement claim against Participant alleging that such Participant's Contributor Version directly or indirectly infringes any patent where such claim is resolved (such as by license or settlement) prior to the initiation of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then the reasonable value of the licenses granted by such Participant under Sections 2.1 or 2.2 shall be taken into account in determining the amount or value of any payment or license.

**8 조 3 항.** 당신이 당사자를 상대로 그 당사자의 기여자 버전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어떤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특허 침해 클레임을 주장하는 경우 중에서, 그러한 주장이 특허 침해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라이선스 또는 합의 등에 의해서) 해소되었을 경우, 지불 금액이나 라이선스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있어 당사자가 2 조 1 항이나 2 조 2 항에 따라 부여한 라이선스들의 적절한 가치가 참작되어야 한다.

**8.4** In the event of termination under Sections 8.1 or 8.2 above, all end user license agreements (excluding distributors and resellers) which have been validly granted by You or any distributor hereunder prior to termination shall survive termination.

**8 조 4 항.** 위의 8 조 1 항이나 8 조 2 항에 따라 라이선스가 종료되는 경우라도, 당신이나 다른 배포자에 의해 라이선스에 따라 합당하게 부여된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서 (배포자와 재판매자에 대한 라이선스 제외)들은 전부 효력이 지속된다.

## 9. LIMITATION OF LIABILITY.

### 제 9 조. 책임의 제한.

UNDER NO CIRCUMSTANCES AND UNDER NO LEGAL THEORY, WHETHER TORT (INCLUDING NEGLIGENCE), CONTRACT, OR OTHERWISE, SHALL YOU, NOKIA, ANY OTHER CONTRIBUTOR, OR ANY DISTRIBUTOR OF COVERED SOFTWARE, OR ANY SUPPLIER OF ANY OF SUCH PARTIES, BE LIABLE TO ANY PERSON FOR ANY INDIRECT, SPECIAL, INCIDENTAL,

OR CONSEQUENTIAL DAMAGES OF ANY CHARACTER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DAMAGES FOR LOSS OF GOODWILL, WORK STOPPAGE, COMPUTER FAILURE OR MALFUNCTION, OR ANY AND ALL OTHER COMMERCIAL DAMAGES OR LOSSES, EVEN IF SUCH PARTY SHALL HAVE BEEN INFORMED OF THE POSSIBILITY OF SUCH DAMAGES. THIS LIMITATION OF LIABILITY SHALL NOT APPLY TO LIABILITY FOR DEATH OR PERSONAL INJURY RESULTING FROM SUCH PARTY'S NEGLIGENCE TO THE EXTENT APPLICABLE LAW PROHIBITS SUCH LIMITATION. SOME JURISDICTIONS DO NOT ALLOW THE EXCLUSION OR LIMITATION OF INCIDENTAL OR CONSEQUENTIAL DAMAGES, BUT MAY ALLOW LIABILITY TO BE LIMITED; IN SUCH CASES, A PARTY'S, ITS EMPLOYEES, LICENSORS OR AFFILIATES' LIABILITY SHALL BE LIMITED TO U.S. \$50. Nothing contained in this License shall prejudice the statutory rights of any party dealing as a consumer.

사전에 손해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당신이나 노키아, 또는 라이선스 적용 소프트웨어의 다른 기여자나 배포자 및 그러한 당사자들에 대한 공급자는 어떤 조건이나 법 이론에 의해서도, 불법행위(과실 포함), 계약 등과 관계 없이, 영업권 상실, 업무 정지, 컴퓨터 고장이나 비작동, 또는 기타 모든 상업적 손상이나 손해를 제한 없이 포함하는 간접적이거나 특수한 손해, 우발적이거나 결과적 손해에 대하여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면책 사항들은 적용 가능한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그러한 당사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망이나 개인적 상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부 재판관할지는 우발적이거나 결과적 손해의 배제나 제한을 허용하지 않지만, 책임의 제한은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당사자나 고용인, 라이선서 또는 회원의 책임은 US \$50 으로 제한된다. 본 라이선스의 어떠한 내용도 소비자로서 행동하는 어떤 당사자의 법적 권한들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 10. MISCELLANEOUS.

### 제 10 조. 기타 사항.

This License represents the complete agreement concerning subject matter hereof. All rights in the Covered Software not expressly granted under this License are reserved. Nothing in this License shall grant You any rights to use any of the trademarks of Nokia or any of its Affiliates, even if any of such trademarks are included in any part of Covered Software and/or documentation to it.

본 라이선스는 그 내용에 대한 전적인 동의를 선언한다. 본 라이선스에 따라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는, 라이선스 적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권한은 보유된다. 노키아나 그 계열사의 상표가 라이선스 적용 소프트웨어의 어느 부분이나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도, 본 라이선스의 어떤 내용도 당신에게 그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This License is governed by the laws of Finland excluding its conflict-of-law provisions. All disputes arising from or relating to this Agreement shall be settled by a single arbitrator appointed by the Central Chamber of Commerce of Finland. The arbitration procedure shall take place in Helsinki, Finland in the English language. If any part of this Agreement is found void and unenforceable, it will not affect the validity of the balance of the Agreement, which shall remain valid and enforceable according to its terms.

본 라이선스는 법률 저촉 조항을 제외하고 핀란드 법률에 의해 구속된다. 본 라이선스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모든 분쟁들은 핀란드 중앙 상공회의소에서 임명한 단일 중재인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 중재 과정은 핀란드 헬싱키에서 영어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계약서의 어떤 부분이 효력이 없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그것이 계약서의 나머지 부분의 타당성에 영향을 주지는 않으며, 나머지 부분은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타당성과 효력이 지속될 것이다.

## 11. RESPONSIBILITY FOR CLAIMS.

### 제 11 조. 배상요구에 대한 책임.

As between Nokia and the Contributors, each party is responsible for claims and damages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out of its utilization of rights under this License and You agree to work with Nokia and Contributors to distribute such responsibility on an equitable basis. Nothing herein is intended or shall be deemed to constitute any admission of liability.

노키아와 기여자 사이에서 각 당사자는 본 라이선스에 의한 권리의 사용으로 인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발생한 배상요구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며, 당신은 노키아와 기여자들과 함께 그러한 책임을 공평하게 배분하는 데 동의한다. 여기에 있는 어떤 내용도 의무의 인정을 구성하도록 의도되지 않았으며, 그렇게 해석되어서도 안 된다.

## EXHIBIT A

The contents of this file are subject to the NOKOS License Version 1.0 (the "License"); you may not use this file except in compliance with the License

이 파일의 내용은 NOKOS 라이선스 버전 1.0("라이선스")에 의해 구속된다; 당신은 라이선스를 준수하지 않는 한 이 파일을 사용할 수 없다.

Software distributed under the License is distributed on an "AS IS" basis, WITHOUT WARRANTY OF ANY KIND, either express or implied. See the License for the specific language governing rights and limitations under the License.

라이선스에 의해 배포된 소프트웨어는 어떤 종류의 보증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배포된다. 라이선스에 의한 권리와 제한 사항을 규정하는 특정 언어에 대해서는 라이선스를 참고하라.

The Original Software is

\_\_\_\_\_.

**Copyright © <year> Nokia and others. All Rights Reserved.**

Contributor(s): \_\_\_\_\_.

원본 소프트웨어:

\_\_\_\_\_.

**저작권 © <연도> Nokia and others. 모든 권리를 보유함.**

기여자: \_\_\_\_\_.